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(안 별표 제2호(95)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